

의안 번호	제3659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이 개정(2025. 4. 23.시행)됨에 따라,
- 「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, 「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」를 폐지하고, 「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」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법적인 근거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총칙(안 제1장)
 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6조)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안 제2장)
 - 진흥계획의 수립, 주민의견청취, 가이드라인 등(안 제7조~제11조)
- 다. 공공디자인 위원회(안 제3장)
 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~제22조)
- 라.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(안 제4장)

- 전담부서의 설치, 공공디자인의 협의 등(안 제23조~제25조)
- 마.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·홍보 등(안 제5장)
- 관계기관의 협력 등, 교육 및 홍보 등(안 제26조~제28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